

##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1. 계약 기간

- 1)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.
- 2)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2. 계약 목적

- 1)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- 2)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자립 생활을 도우며,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어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3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.

### 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

- 1)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안내를 하고,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- 2)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까지 납부 하되, 납부일이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.
- 3)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 (현금납부 시는 본인 부담금 통장으로 이체시킨다.)
- 4)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수가를 확인하여 부담하는데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.
- 5)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,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.  
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  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%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(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~9%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)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.
- 6) 전액 본인부담인 경우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
  -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
  -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
  - ④ 비급여 항목(시행규칙 제 14조)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(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)
- 7) 노인 장기요양 급여종류 급여비용과 본인 부담금에 따른 월 이용료 부담액은 ※ 별표와 같다.  
(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)
- 8)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#### 4. 이용자의 구비서류

- 1)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
- 2) 개인별 장기이용계약서 사본 1부
- 3)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1부 (선택사항)
- 4)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

#### 5. 이용자 등에 대한 기관의 의무

- 1)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항목을 지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무하도록 교육한다.
  - 두발 신체 및 복장은 항상 청결히 한다. (매월 회의 시 확인한다.)
  - 근무에 적합한 단정하고 간편한 복장에 앞치마를 착용한다.
  -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 등 무례한 행위를 금하며 친절함을 유지 한다.
  -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, 반드시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구한다.
  - 이용자와 계약한 일정 및 급여제공시간 등을 준수한다.
  - 급여제공 기록지에 서비스제공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- 2) 위와 같은 교육을 급여제공 전에 실시하여 신규요양보호사 또는 재배치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다.
- 3) 신규 요양보호사에게 노인인권 보호지침, 응급조치사항, 비상연락망 등을 교육 시킨다.
- 4)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

한다.

- 5) 당월 급여제공 기록지를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체계적인 급여제공이 이뤄지도록 한다.
- 6) 익월 급여계약 통보서를 보호자 또는 전담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을 알 수 있게 한다(이용자의 식탁, 냉장고, 벽 등에 붙여 게시하게 함)

## 6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### 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### 2) 의무

- 가)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시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적극적인 협력의무
- 나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다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라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마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
- 바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, 비품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, 배상의 의무, 수급자 실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물품등의 훼손,파손,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의무
- 사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### 3). 계약의 해제

- 가)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.
  -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.
  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.  
(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)

-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.
  -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.
  -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외적인 부분을 요구할 때(사적인 일)
  -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 시 (폭언, 폭력, 성희롱, 성폭행 등).
- 나)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2.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##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일부부담 기준(2026.01.01)

### ◆ 등급별 재가급여 월한도액(원) 및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

| 등 급       | 월 한도액     | 본인 일부 부담금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| 일반대상자<br>(15%) |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/ 차상위<br>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<br>(희귀난청,만성질환자)/저소득층 |         | 국민기초생활보장<br>(의료급여)수급권자 |
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9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%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요양 1등급  | 2,512,900 | 376,930        | 226,1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0,770 | 면제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요양 2등급  | 2,331,200 | 349,680        | 209,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9,870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요양 3등급  | 1,528,200 | 229,230        | 137,5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,69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요양 4등급  | 1,409,700 | 211,450        | 126,8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4,58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장기요양 5등급  | 1,208,900 | 181,330        | 108,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,53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등외 (인지등급) | 676,320   | 101,440        | 60,8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,570 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◆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6.01.01.)

| 서비스<br>시 간 | 금액(원)  | 본인부담금 |       |       | 서비스<br>시 간 | 금액(원)  | 본인부담금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       | 15%   | 9%    | 6%    |            |        | 15%    | 9%    | 6%    |
| 30분<br>이상  | 17,450 | 2,610 | 1,570 | 1,040 | 150분<br>이상 | 50,640 | 7,590  | 4,550 | 3,030 |
| 60분<br>이상  | 25,320 | 3,790 | 2,270 | 1,510 | 180분<br>이상 | 57,020 | 8,550  | 5,130 | 3,420 |
| 90분<br>이상  | 34,120 | 5,110 | 3,070 | 2,040 | 210분<br>이상 | 63,530 | 9,520  | 5,710 | 3,810 |
| 120분<br>이상 | 43,430 | 6,510 | 3,900 | 2,600 | 240분<br>이상 | 70,080 | 10,510 | 6,300 | 4,200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  
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